

□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

1. 성폭력이란 :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·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 합니다.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 됩니다. (어린이·장애인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)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·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2. 성폭력의 유형

구 분	내 용
육 체 적 행 위	①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② 가슴,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
언 어 적 행 위	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하는 행위 ④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하는 행위 등
시 각 적 행 위	① 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내주는 행위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기타 행위	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

□ 성폭력 예방지침

1.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

- 가. 성폭력은 아는 사람이나 너무 대상자와 친밀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.
- 나. 성폭력은 한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피해자의 집 등에서 일어나기 쉽다.
- 다. 남자요양보호사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.
- 라. 성폭력 노인은 모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 한다.

2. 성폭력 발생 예방요령

- 가.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한다.
- 나.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에 적극 참여한다.
- 다. 동료 및 수급자들과의 음담패설을 삼간다.
- 라.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.
- 마.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,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.
- 바.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사.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.
- 아.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.

□ 성폭력 대응지침

1. 성폭력 대처방안

【기관에서의 대처방법】

- 가.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.
 - 기관은 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.
- 나. 성폭력 피해자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한다.
 -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.
- 다. 성폭력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.

-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, 성희롱을 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.
- 라.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한다.
- 마.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 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,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.
- 바. 성폭력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한다.

【개인의 대처 방법】

- 가.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,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한다.
 - 1) 서비스이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.
 - 2)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.
- 나.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 -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- 다.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 한다.
 -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(성폭력상담소, 여성 노동 상담소 등)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.
- 라.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.
 - 성폭력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계획을 명확히 설명 한다.
- 마. 음담패설을 삼간다.

바.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 한다.

사. 분명하게 거부의를 직접표현하고,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.

-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 되어야한다,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 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아.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

【서비스 중 수급자(노인)로 부터의 성희롱 대처방법】

가.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, 단호히 거부의를 표현

나.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

다.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

라.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

마. 외부기관(성폭력상담소, 여성 노동 상담소)등에 상담

바.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법숙지

사. 음담패설 등 자제

【치매노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경우 대처방법】

가. 성희롱 징후가 보이는 경우 거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.

나. 옷이 너무 꼭 끼기 때문에 옷을 벗거나 혹은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방문객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, 목욕탕에 가고 싶기 때문에 바지를 벗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.

다. 만약 치매대상자가 자신의 속옷을 벗으려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는 것을 보면 『손 치우세요!』 와 같은 단호한 말을 반복

해서 사용하면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다.

- 라.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때, 그러한 활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그들이 좋아 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.
- 마. 치매어르신 등의 성희롱 징후 포착 시 주위환기 및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질문이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바. 심한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에 반드시 알리고 상담 하도록 한다.

[요양서비스 중 성희롱 피해 노인의 대응방법]

- 가.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.
- 나.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. (국가인권 위원회 법 ,제30조제1항)
- 다.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.
- 라.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(민법제750조)